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4. 10. 30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0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4. 10. 30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주민자치과장 김 종 선

가. 제안이유

주민등록법이 개정(2004.3.22 법률 제7201호)됨에 따라 우리구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, 보험가입금액,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보험가입 대상인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규정함(안 제2조)

○ 구청장은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고,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
○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
○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, 이 경우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조례안은 2004. 3. 22 법률 제7201호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주민등록법(2004. 3. 22 법률 제7201호로 개정)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 근무하는 '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의 가입대상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금의 청구·변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, 보험·공제 운영주체를 선정 할 때에는 공제회비, 보상범위, 운영방법 등은 물론 보상혜택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 유익한 상품을 선정하여 가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○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현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 등에 가입한 구는?

○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용산구 등 7개구는 보험에 가입하였고 나머지 구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음.

○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보험회사는 지정 되었는가?

○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할 예정임.

○ 질의요지(유남렬 위원) : 직원이 다른 사람하고 결탁되어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가?

○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음.

○ 질의요지(김영식 위원) : 보험가입 대상자는 총 몇명인가?

○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총 79명임.

○ 질의요지(김영식 위원) :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가?

○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예. 그렇습니다.

○ 질의요지(전완수 위원) : 주민등록 사고 배상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는?

○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현재 규정에는 본인이 책임을 짐.

○ 질의요지(박지위 위원장代) : 보험은 소멸성인가 저축성인가?

○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소멸성 임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4. 10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주민등록법이 개정(2004.3.22 법률 제7201호) 됨에 따라 우리구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, 보험가입 금액,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보험가입 대상인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 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고,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, 이 경우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
3. 제정근거

- 주민등록법(2004.3.22 법률 제7201호) 제20조

4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2005년도 예산편성(4,882천원)

나. 협의 : 기획예산과 및 세무1과와 협의 완료함.

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(1)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함.

(2)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(안)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 가입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) 이 조례에서 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”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